

2005. 3.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목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구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제110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발의자 : 김 남 원 의원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金南元	W	
具宗宇	具宗宇	
吳景燮	吳景燮	
이재현	이재현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966
------	-----

발의년월일 : 2005. 3.
발 의 자 : 김남원의원외3인

1. 제안이유

FTA 및 TRQ로 인한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지역농산생산물의 경쟁력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시책을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하여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원회의 기능)

- FTA·TRQ 발효에 따른 지역농업대책 연구 및 대안제시
-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방향에 관한사항
- 정부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사항
-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사항
- 각종농업시책에관한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기타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은 교수, 의회의원, 농업관련단체장 및 전문가, 농업관련 공무원중 시장이 위촉

○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며, 농업관련단체장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시장이 수시 위·해촉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제6조(회의 및 운영)

-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붙임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 부 끝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농업생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FTA·TRQ 발효에 따른 지역농업대책 연구 및 대안제시
2.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정부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수, 의회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및 전문가, 농업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1인씩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관광담당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농업관련단체장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시장이 수시 위·해촉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귀속) ① 위원회에서는 농업관련 시책에 관한 연구·평가, 분석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천시에 귀속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추천) 위원장은 제천시 농업발전 및 소득증대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상급기관 또는 시장에게 추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의 위원회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 28 훈령 제1180호

이 규정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 도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위원회의 목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별하고 당연직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기획관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대표 7인 이내
2. 소비자 단체 및 학계·전문가 등 5인 이내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괴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예산과 예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 회의 소집 및 의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충청북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업인 단체 임원 및 민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기금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기금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신임건설위원회 부록]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2단비교검색]

2002.10. 9 조례 제1652호

2003. 1. 13 조례 제165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어촌발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宗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흐선하며, 위원은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전문성을 가졌거나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유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3. 1. 13>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는 보좌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원장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는 농산분과위원회와 수산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각각 8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장은 반드시 하나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하며,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정한자로 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결과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해군위원회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운영규칙) 이 조례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818 - 2003. 1. 13.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미전 ○ 미전

第24編 農業 第1章 行政組織·通則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농림부·해양수산부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36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박탈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제 1호 내지 제 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
6.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7.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실천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선된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理解)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차 등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총 140)

第24編 農業 第1章 行政組織·通則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정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9인 이내
2.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5인 이내
3.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임기별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퇴임된 때에는 위원장의 재정을 거쳐 새로 위원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통령비서실의 청탁기록 또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농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

第24編 農業 第1章 行政組織·通則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어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상임위원장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인문계의 전문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제 4 조, 제 5 조 및 제 6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제 5 항은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이율 준용한다.

제 8 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 ①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전문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 운영 지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상과 힘을 통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 10 조 (지역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 11 조 (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